

제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 8. 30(水)

조례안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종 목

목 차

- ①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 ②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8
- ③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 ④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14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8월 21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도시건축과)
- 다. 회부일자 : 2006년 8월 22일

II. 제안이유

-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5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7조)
- 부담금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건축행위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IV.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지난 2006. 1. 11 제정·공포되고, 2006. 7. 12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100분의 70)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당해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부담비용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원칙을 실현하여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나.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9조의 건축행위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건축허가 행위 시 기반시설 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이는 주민과 직접 상관이 없는 집행부 내부의 행정절차로서 본 조례안 제11조(시행규칙)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9조의 내용 중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부담금 미납 시 건축법 등 개별법상 사용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본 조례에 의거 그 사용승인을 제한 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 논란의 소지가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시설부담금 미납에 따른 벌칙,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안 제9조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의 견
제9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행위 시 기반시설 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삭 제>

《안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

- 안 제10조에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되어 있어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이 중복되어 정리가 필요함.

안 제10조 관련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의 견
<p><u>제10조</u>(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u>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9조</u>(운영 및 관리)..... <u>예에 의한다.</u></p>
<p><u>제11조</u>(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0조</u>(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다. 종합적으로

- 안 제4조 수입에서 주된 수입금은 기반시설부담금이 될 것이며, 제2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이 특별회계의 성격상 사실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수입금은 이자발생분과 순세계잉여금이 해당될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 세출의 용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끝으로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고, 8. 18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V.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불요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06. 6. 17 ~ 7. 7(20일간)
- 방 법 :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 의견제출 : 별도의견 없음

참고자료 - 관련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법 제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

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나. 기반시설의 설치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드는 비용

다.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7>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제67조 (기반시설부담금) ①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이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방법, 부과기준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8월 21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재난안전관리과)
- 다. 회부일자 : 2006년 8월 22일

II. 제안이유

-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 일관성 유지,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음.

III. 주요내용

-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안 제4조 내지 제6조)
 -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행위를 제한
 - 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도면의 고시
 -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 제한(안 제7조, 제8조)
 - <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 가능 >
 - 침수 및 유실 등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 침수위험 지역의 배수개선 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없음

IV.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 용어의 정의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되어 있는바 제1호에는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 5개 지구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 안 제6호에서 “침수위험지구” 안 제7호에서 “붕괴위험지구” 만 정의되어 있고 나머지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는 용어의 정의에서 빠져 있음
-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되면 건축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 지구별로 용어의 정의를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안 제8조와 관련하여》

- 안제8조 제2항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기술사 및 전문가 확보 방안이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 여부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안 제1조(목적)와 관련하여》

- 안 제1조의 목적 조항이 너무 산만하여 자구정리 필요

안 제1조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의 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1조(목적)</u> …………… …………… …………… <u>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다. 종합적으로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고 소방방재청과 경상남도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 예고와 8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음.

V.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

나. 예산조치 : 불요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06. 6. 29 ~ 7. 18(20일간)
- 방 법 :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 의견제출 : 별도의견 없음

참고자료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자연재해위험지구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8월 21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재난안전관리과)
- 다. 회부일자 : 2006년 8월 22일

II. 제안이유

-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실·과 명칭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
⇒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앞뒤 낫표(「」)를 사용(안 제1조) ⇒ “통합방위법”을 “「통합방위법」”으로 개정
- 통합방위협의회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를 “행정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작전담당 간사 중 “거창경찰서 경비과장”을 “거창경찰청 정보보안과장”으로 변경(안 제3조)
- 방위지원본부 내 동일한 성질의 지원반 삭제(안 제4조 제6항)
⇒ 분야별 지원반에서 “총괄지원반” 삭제

IV.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5년 6월 20일 조직개편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가 행정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3조와 관련하여 담당과장의 명칭을 바로 규정하게 되면 또다시 직제개편이 있을 경우 그때마다 조례를 변경해야 되므로 부서장의 명칭보다는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3조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생략)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행정과장 2. 작전담당 간사 가. (생략) 나. 거창경찰서 경비과장 3. (생략)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재난안전관리과장 2. 작전담당 간사 가. (현행과 같음) 나. 거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3.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방위협의회업무 담당과장 2. 작전담당 간사 가. (현행과 같음) 나. 거창경찰서 방위협의회 업무 담당과장 3. (현행과 같음)

V.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06 - 50호>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8월 21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농업기술센터)
- 다. 회부일자 : 2006년 8월 22일

II. 제안이유

-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거주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함.

III. 주요내용

-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필요한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제5조)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IV.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거주 총각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으로
-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목적, 농촌총각의 정의, 지원기준 및 시기, 지급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본 조례 제정의 배경과 그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 농촌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사업을 지원하여 젊은 농업 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농촌 정착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경상남도의 신규 시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 금년에는 2억 4,000만 원(도비 30%, 시군비 70%)의 사업비로 시·군별로 2명씩 40명을 계획인원으로 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계획인원 2명으로 도비 360만 원, 군비 840만 원, 합계 1,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 이 시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정상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해야 하므로 이번에 우리 군의 조례는 물론 경상남도과 전시·군에서 일제히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

- 한편, 이 조례는 지난 제4대 의회 제127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당시 심의과정에서 “본 조례에 의한 혼인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동시에 지원되는 시책사업으로 우리 군의 조례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경남도에서 조례안이 추진중에 있는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이유로 심의 보류”되었으며
- 2006년 6월 30일자로 4대의회가 임기 만료되어 조례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이번에 다시 회부되어온 조례임.

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 안 제1조 목적에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만을 주선하고 있어 내국인과 결혼하는 농촌총각은 지원이 배제되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안 제4조 지원기준에서 연령별, 또는 빈부의 격차를 감안 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안 제6조 대상자 선정 및 절차에서 자체 심사기준, 안 제8조의 사후관리 대책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세부 추진 계획을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제9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안 제8조의 사후관리는 농촌총각이 국제결혼한 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곧바로 이혼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면밀한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며
 사후관리가 중요한 만큼, 대책수립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재량이 없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용어의 수정이 필요함.

안 제8조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의 견
<p>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u>강구할 수 있다.</u></p>	<p>제8조(사후관리)<u>강구하여야 한다.</u></p>

라. 종합적으로

-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농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속 감소하는 농촌인구의 증대효과가 다소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며,
- 경상남도에서 통보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음.

V.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 12,000천 원(도비 3,600, 군비 8,400) 확보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06. 3. 21 ~ 4. 10(20일간)
- 방 법 :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 의견제출 : 별도의견 없음

참고자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8조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